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354 발의연월일: 2025. 2. 21.

발 의 자:임이자·조지연·유상현

정점식 • 우재준 • 이상휘

김용태 • 조승환 • 김위상

강대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 법령은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고,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.

그런데 전학을 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같은 학군에 속하는 학교를 다니는 관계로 서로 만날 수 있고, 전학이 아닌 출석정지·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같은학교를 다니는 경우 계속해서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함.

이에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교육지원청을 달리하는 학교를 배정하고, 출석정지·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상급하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를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.

제안이유

- 가.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·학급교체
 ·전학 조치를 요청한 때에는 그 이유가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·보
 복행위 등일 경우 상급학교의 배치에 있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
 학교를 분리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의제함(안 제17조제3항 신설).
- 나.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와 관련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의 학교 를 배정하도록 함(안 제17조제16항 신설).
- 다.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출석정지·학급교체 조치와 관련된 피해학 생과 가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도록 함(안 제17조제17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,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중 "제5항 및 제6항에"를 "제6항 및 제7항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11항(종전의 제10항) 중 "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"를 "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18항(종전의 제15항) 중 "제7항에도"를 "제8항에도"로 하며, 같은 조 제19항(종전의 제16항) 중 "제7항에도"를 "제8항에도"로 하며, 같은 조 제19항(종전의 제16항) 중 "제9항, 제10항 및 제15항에"를 "제10항, 제11항 및 제18항"으로 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하여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그 이유가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, 괴롭힘,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보복행위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)일 경우 상급학교의 배치에 있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교를 분리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.
- (b)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제8호에 따른 조치와 관련된 피해학 생과 가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

관할 구역의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.

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조치와 관련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각각 다른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학교 분리 조치 및 배정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제3항, 제16항 및 제1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교 분리 조치 및 배정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폭력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 ①	제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 ①
·② (생 략)	· 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
	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하여
	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
	의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그
	이유가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,
	괴롭힘,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
	보복행위(정보통신망을 이용한
	행위를 포함한다)일 경우 상급
	학교의 배치에 있어 피해학생
	과 가해학생의 학교를 분리하
	는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.
<u>③</u> ~ <u>⑥</u> (생 략)	<u>④</u> ~ <u>⑦</u> (현행 제3항부터 제6
	항까지와 같음)
<u>⑦</u>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	<u>⑧</u> 제6항 및 제7항에
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	
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	
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	
다.	.
<u>⑧·⑨</u> 생 략)	<u>⑨</u> ・ <u>⑩</u> (현행 제8항 및 제9항
	과 같음)
<u>⑩</u> 학교의 장이 <u>제4항부터 제6</u>	<u>①</u> <u>제5항부터 제7</u>
<u>항까지에</u> 따른 조치를 한 때에	<u>항까지에</u>

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, 가해학 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 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「초・ 중등교육법」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.

⑪ ~ ⑭ (생 략)

<u><신 설></u>

<신 설>

⑤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

<u>.</u>
$\underline{\textcircled{0}} \sim \underline{\textcircled{0}}$ (현행 제 11 항부터 제
14항까지와 같음)
ⓑ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
항제8호에 따른 조치와 관련된
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상급학
교로 진학하는 경우 각각 다른
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의 학교
를 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
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
선적으로 배정한다.
⑪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
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조
치와 관련된 피해학생과 가해
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
경우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
여야 한다. 이 경우 피해학생이
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
<u>정한다.</u>
<u>®</u>

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<u>제7항에도</u>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있다.

(6)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<u>제9항, 제10항 및 제15항에</u> 따른 조치 또는 짓계가 지역되거

제9항,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 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,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.

① (생략)